

대전·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

의안 번호	7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☐ 제안이유

- 제 5회 「대전·충청권 발전협의회」 총회(2003. 1. 17)에서 “대전·충청권” 명칭을 “충청권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- “대전·충청권 행정협의회” 명칭을 “충청권 행정협의회”로 변경

☐ 제안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48조

☐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☐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

현 행	개 정 안
<u>대전·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</u> 제1조 (목적)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대전·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</u>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<u>대전·충청권 행정협의회</u>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 제3조 (구성) 협의회는 <u>대전·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, 충청남도</u>(이하 “구성단체”라 한다)로 구성한다. 제9조 (사무처리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②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이 되고, 서기는 <u>광역행정 업무담당 계장</u>의 된다. 제12조 (미 합의 사항 조정요청)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<u>내무부장관</u>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>	<u>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</u> 제1조 (목적)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</u>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<u>충청권 행정협의회</u>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 제3조 (구성) 협의회는 <u>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, 충청남도</u>(이하 “구성단체”라 한다)로 구성한다. 제9조 (사무처리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②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이 되고, 서기는 <u>광역행정 업무 담당 사무관</u>이 된다. 제12조 (미 합의 사항 조정요청)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<u>행정자치부장관</u>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부칙(2003. .)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 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8.31>

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48조 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